

### 제3장 피난 유도 설비

#### 3. 유도등

##### 1) 피난구 유도등 -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하는 출입구에 설치

###### (1) 설치장소

-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
- ② 직통계단·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
- ③ ①, ②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
- ④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

###### (2) 설치기준

- ①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: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1.5[m] 이상의 곳에 설치
- ②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제외
  - 바닥면적이 1.000[m<sup>2</sup>]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
  -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
  -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[m]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

###### (3) 조명도

- 피난구로부터 30[m] 거리에서 문자나 색깔 식별 (녹색바탕에 백색 표시)

##### 2) 통로 유도등

###### (1) 종류

- ① 복도통로유도등: 피난구 방향을 명시하기 위하여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유도등
- ② 거실통로유도등: 거실,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서 거주, 집무, 작업집회, 오락 등 이와 유사한 목적의 사용장소의 피난방향을 명시하는 것
- ③ 계단통로유도등: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되는 유도등으로 바닥면이나 디딤바닥면을 비추는 것

###### (2) 설치기준

종류	복도·거실통로유도등	계단통로유도등	유도표지
설치기준	보행거리 20[m] 이하	경사로 참	보행거리 15[m] 이하
	구부러진 모퉁이	계단 참	구부러진 모퉁이

###### (3) 조명도

종류	통로유도등	객석유도등	비상조명등
조명도	1[lx] 이상	0.2[lx] 이상	1[lx] 이상

###### (4) 유도등의 설치개수

- ① 통로유도등 - 구부러진 모퉁이 및 직선의 보행거리[m] / 20 - 1
- ② 객석유도등 -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[m] / 4 - 1
- ③ 유도표지 - 구부러진 모퉁이 및 직선의 보행거리[m] / 15 - 1

##### 3) 유도등의 전원

-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
- ②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20분 이상 작동

4)3선식 배선 유도등의 점멸기 설치시 반드시 점등되어야 하는 것

-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시
- ②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
- ③자동소화설비가 작동시
- ④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
- ⑤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